

1. 개정 이유

2020. 10. 2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2021. 4. 21. 시행)으로 보호소년등 처우·징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및 간호사의 경미한 의료행위 허용 등 개정 법률 시행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소년원 등을 이탈한 보호소년에 대해 보호처분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 (안 제16조제1항 수정)

기존에는 「소년법」 제32조제1항8호 또는 9호 처분을 받고 소년원에서 이탈한 소년에 대해서만 처분변경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실무상 모든 보호소년에게 처분변경을 신청하고 있으므로 보호처분을 받은 모든 보호소년이 소년원을 이탈하였을 경우 처분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보호장비의 사용방법에 관하여 규정 (안 제24조의2 신설)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에 규정되었던 수갑, 포승 등 보호장비별 세부적인 사용방법을 시행규칙에 상향입법함으로써 보호소년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

다.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기간을 규정(시행규칙안 제44조의2 신설)

법 제20조의2에 따라,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가 법무부장관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기간을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함

라. 진료기록부의 송부 및 요청에 관하여 규정(안 제44조의3 신설)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근무하는 의무과장은 「의료법」 제21조의2에 따라, 보호소년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출원생이나 그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송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이 외래진료를 받는 지정법무병원의 의료인이 진료기록의 사본 등의 송부를 요청할 경우, 출원생이나 그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그 요청에 응하도록 함

마. 출원생의 외래진료의 기간·방법, 외래진료 비용지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4조의4 ~ 안 제44조의5 신설)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의료재활소년원의 출원생이 신청할 경우, 10년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 및 의료재활소년원장이 지정한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무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외래진료 비용을 지급하도록 함

바. 재·퇴원 증명서 발급 방법 규정(안 제76조제1항 신설)

보호소년 및 보호자 등 영 제87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민원을 통해 재·퇴원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영 제6조에”를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장”을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제2조의”를 “제1조의2”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여자인”을 “여성인”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여자직원”을 각각 “여성직원”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처우심사위원회의”를 “법 제15조의2의 보호소년등처우·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처우심사)”를 “(위원회 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처우심사는 처우심사사유”를 “위원회의 심사는 심사사유”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3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처분”을 “제32조제1항의 보호처분”으로, “제8호는 제9호로, 제9호는 제10호로 처분의”를 “처분”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의료·재활교육대상자 이송)”을 “(의료재활처우소년의 이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료·재활교육 소년원”을 “의료재활소년원”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의료·재활교육소년원 이송절차 등)”을 “(의료재활소년원 이송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료·재활교육소년원장”을 “의료재활소년원장”으로, “의료·재활교육과정”을 “의료재활과정”으로, “처우심사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의2(보호장비의 사용방법) ① 수갑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방법으로 할 것
2. 법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의 방법으로는 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별표 1의2의 방법으로 할 것
3. 외부병원에 입원 중인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한 손 수갑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표 1의3의 방법으로 할 것
4. 제2호에 따라 별표 1의2의 방법으로 수갑을 사용하여 그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즉시 별표 1의 방법으로 전환하거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포승(捕繩)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 면접대상자 등 이탈의 위험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보호소년등을 개별 호송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4, 별표 1의7 또는 별표 1의9의 방법으로 할 것
2. 법 제14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호송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5 또는

별표 1의8의 방법으로 할 것(다만, 3명 이상의 보호소년등을 호송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4의 방법으로 할 수 있음)

3. 법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의4, 별표 1의5, 별표 1의8의 방법으로는 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별표 1의6의 방법으로 할 것

4. 3명 이상의 보호소년등을 인솔하거나 호송하는 경우에는 연속으로 포승 할 것. 이 경우 성별이 다른 보호소년등은 서로 분리하여 연결하여야한다

5. 1호에서 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보호소년 처우지침」 제5조에 따른 개방처우 중인 경우 등 보호소년등 이탈의 위험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포승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가스총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스총은 법 제14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2. 가스총을 사용하려면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사전에 상대방에게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가스총을 발사할 때는 바람을 등지고 얼굴을 향해 발사하며, 해당 보호소년등의 안전 및 가스총 발사효과 등을 고려하여 발사거리는 2~3미터를 유지한다

4. 가스총의 탄환 및 분사약재 등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폐기하여야 한다

④ 전자충격기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충격기는 법 제14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황이 긴급하여 전 항의 장비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사용할 수 있다.
2.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려면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사전에 상대방에게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때에는 가급적 이를 사용함으로써 나타나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타격 즉시 떼어야 한다. 이 경우 상대방의 머리, 얼굴, 가슴, 그 밖에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⑤ 머리보호장비는 별표 1의10의 방법으로 사용하며, 보호소년등이 머리보호장비를 임의로 해제하지 못하도록 다른 보호장비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⑥ 보호대(保護帶)는 보호대에 부착된 고리에 수갑을 연결하여 별표 1의 11의 방법으로 사용할 것

⑦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용 후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년분류심사원”을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4조의6제1항 및 제2항 중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을 각각 “소년원등”으로 한다.

제24조의7 중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을 “소년원등”으로 한다.

제24조의8 중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을 “소년원등의”로 한다.

제24조의9제1항 및 제3항 중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을 각각 “소년원등”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별표 1의2”를 “별표 2”로 한다.

제29조 본문 중 “별표 2의”를 “별표 2의2”로, “처우심사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보호소년 등”을 “보호소년등”으로 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이발과 목욕)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이발 및 목욕을 수시로 하도록 하여 단정한 용모와 청결한 신체상태를 유지하게 한다.

제2장제7절에 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진료기록부등의 보존) 법무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제44조의3(진료기록부등의 송부 및 요청) ①의무과장은 「의료법」 제21조의2에 따라 보호소년등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소년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소년이나 그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의료법」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진료기록의 사본

및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송부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② 의무과장은 「의료법」 제21조의2에 따라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이 외래진료를 받는 지정법무병원의 의료인이 출원생의 치료를 위하여 「의료법」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진료기록의 사본 및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 또는 전송할 것을 요청한 경우 해당 출원생이나 그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44조의4(출원생의 외래진료의 기간·방법) ①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법 제20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다.

- ② 외래진료는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일로 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 ③ 외래진료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진료, 검사시설에 의한 검사, 처방 및 투약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44조의5(출원생의 외래진료비용) ① 법 제20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외래진료에 필요한 비용은 법무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 또는 보호자등이 부담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외래진료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지정법무병원의 장은

별지 제36호서식의 외래진료비용 지급 청구서에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별 진료비 계산서를 첨부하여 매달 1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제1항 중 “법 제2조제2항”을 “법 제3조제2항”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법 제2조제2항”을 각각 “법 제3조제2항”
으로 한다.

제59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63조 중 “휴일”을 “휴업일”로 한다.

제6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전적학교의 졸업장 취득을 위해 학적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제64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71조의 제목 “(종교의식 및 종교지도)”를 “(종교활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종교의식 및 종교지도는”을 “종교활동은”으로
한다.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처우심사”를 각각 “위원회의 심사”로 한다.

제7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영 제87조의2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민원을 통해 재·퇴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81조의2를 삭제한다.

제83조제3항 전단 중 “처우심사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84조제1항 중 “처우심사”를 “위원회의 심사”로 한다.

제85조제1항 중 “처우심사”를 각각 “위원회의 심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2조(처우심사위원회의 구성 등)</u> ① 「<u>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u>」(이하 “<u>영</u>”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처우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u>처우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의 장(이하 “<u>원장</u>”이라 한다)이 된다.</u> ③ <u>처우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영 제2조제1항제3호의 의료·재활교육 소년원에 두는 처우심사위원회의 위원에는 의무직공무원 및 간호직공무원이 포함되어야 한다.</u> 1. <u>해당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각 과장 및 6급 이상의 공무원</u> 2. <u>소년보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	<u><삭 제></u>

④ 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⑤ 처우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 중 위원으로 지명된 사람은 그 재직기간 동안 재임한다.

⑥ 처우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처우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조(처우심사위원회의 위원장)

<삭 제>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처우심사위원회 회의의 운

<삭 제>

영) ① 처우심사위원회의 회의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
한다.

1. 처우심사위원회 위원 2명 이
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
다 고 인정하는 경우

② 처우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
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
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간사) ① 처우심사위원회의

<삭 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우심
사위원회에 1명 또는 2명의 간

② 간사는 위원장이 해당 소년
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5조에 따른 간사는 처우심사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
하여야 한다.

제9조(보호소년등의 인수절차) ①

② 원장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보호소년·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이 영 제6조에 따라 새로 수용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 따른 검사·조사 또는 조치 등을 하고,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보호소년등의 인수절차) 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

②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illegible]

1. ~ 5. (생략)

③ 보호소년등이 여자인 경우에는 제2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 또는 조치는 여자 직원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른 검사는 여자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사나 간호사가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분류처우) 원장은 영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소년등에 대하여는 다른 보호소년등과 생활실 및 처우과정을 달리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은 시설여건이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처우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운영할 수 있다.

1. ~ 4. (생략)

제12조(처우심사) 영 제10조 및 영 제11조에 따른 처우심사는 처우심사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이탈한 사람에 대한 조치)

① 소년원장은 「소년법」 제32

1. ~ 5. (현행과 같음)

③ ----- 여성인 -----

----- 여성
직원-----.
----- 여성
직원-----
-----.

제11조(분류처우) -----

-----.

----- 법 제15조의
2의 보호소년등처우·징계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
-----.

1. ~ 4.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회 심사) -----
----- 위원회의 심사
는 심사사유-----
-----.

제16조(이탈한 사람에 대한 조치)

① ----- 제32

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처
분을 받아 수용된 보호소년이
소년원을 이탈한 후 재수용되었
을 때에는 법원소년부에 제8호
는 제9호로, 제9호는 제10호로
처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21조(의료·재활교육대상자 이
송) ①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호소년을
의료·재활교육소년원으로 이
송하도록 허가해 줄 것을 법무
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2. (생략)

② (생략)

제22조(의료·재활교육소년원 이
송절차 등) ①·② (생략)
③ 의료·재활교육소년원장은
개별처우계획에 따른 의료·재
활교육과정을 마친 보호소년에
대하여는 처우심사위원회의 심
사를 거친 후 해당 보호소년을
처우하기에 적합한 소년원을 정
하여 이송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생략)

조제1항의 보호처분-----

----- 처분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의료재활처우소년의 이송)
① -----

의료재활소년원-----

-----.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의료재활소년원 이송절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의료재활소년원장-----
----- 의료재활
과정-----
----- 위원회-----

-----.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보호장비의 사용방법)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 별표 1의 방법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용 후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의2(보호장비의 사용방법)

① 수갑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방법으로 할 것
2. 법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의 방법으로는 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별표 1의2의 방법으로 할 것
3. 외부병원에 입원 중인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한 손 수갑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표 1의 3의 방법으로 할 것
4. 제2호에 따라 별표 1의2의 방법으로 수갑을 사용하여 그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즉시 별표 1의 방법으로 전환하거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포승(捕繩)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 면접대상자 등 이탈의 위험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보호소년등을 개별 호

송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4, 별표 1의7 또는 별표 1의9의 방법으로 할 것

2. 법 제14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호송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5 또는 별표 1의8의 방법으로 할 것(다만, 3명 이상의 보호소년등을 호송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4의 방법으로 할 수 있음)

3. 법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의4, 별표 1의5, 별표 1의8의 방법으로는 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별표 1의6의 방법으로 할 것

4. 3명 이상의 보호소년등을 인솔하거나 호송하는 경우에는 연속으로 포승 할 것. 이 경우 성별이 다른 보호소년등은 서로 분리하여 연결하여야한다

5. 1호에서 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보호소년 처우지침」 제5조에 따른 개방처우 중인 경우 등 보호소년등

이탈의 위험성이 크지 아니하
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포승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가스총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스총은 법 제14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2. 가스총을 사용하려면 법 제1
4조의2제4항에 따라 사전에
상대방에게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가스총을 발사할 때는 바람
을 등지고 얼굴을 향해 발사
하며, 해당 보호소년등의 안전
및 가스총 발사효과 등을 고
려하여 발사거리는 2~3미터를
유지한다

4. 가스총의 탄환 및 분사약재
등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폐기하여야 한다

④ 전자충격기의 사용방법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충격기는 법 제14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황이 긴급하여 전 항의 장비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사용할 수 있다.

2.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려면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사전에 상대방에게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때에는 가급적 이를 사용함으로써 나타나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타격 즉시 떼어야 한다. 이 경우 상대방의 머리, 얼굴, 가슴, 그 밖에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⑤ 머리보호장비는 별표 1의10의 방법으로 사용하며, 보호소년등이 머리보호장비를 임의로 해제하지 못하도록 다른 보호장비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⑥ 보호대(保護帶)는 보호대에 부착된 고리에 수갑을 연결하여

	<u>별표 1의11의 방법으로 사용할 것</u> <u>⑦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용 후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제24조의4(전자장비의 종류) 법 제14조의3에 따라 소년원 또는 <u>소년분류심사원</u> 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전자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4조의4(전자장비의 종류) --- ----- <u>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 등”이라 한다)</u>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제24조의6(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① 영상정보처리 기기 중 카메라는 <u>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의 청사 정문·운동장, 외곽 담장, 생활관 내 복도, 각 생활실, 생활지도실</u> , 그 밖에 보호소년등의 감호에 필요한 장소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제24조의6(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① ----- ----- <u>소년원등</u> ----- ----- ----- ----- ----- -----.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중 모니터는 상황실·생활지도실, 그 밖에 <u>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u>	② ----- ----- -- <u>소년원등</u> -----

소속 공무원(이하 제24조의10까
지에서 “소속공무원”이라 한다)
이 보호소년등을 감호하기에 적
정한 장소로서 법무부장관이 정
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③ (생 략)

제24조의7(전자감지기의 설치) 전
자감지기는 소년원 또는 소년분
류심사원의 외곽 담장, 그 밖에
보호소년등의 이탈이나 외부로
부터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제24조의8(전자명찰의 사용) 원장
은 수용 중인 보호소년등의 안
전사고 방지, 출석관리 등을 위
하여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
원 내에서 보호소년등에게 전자
명찰을 휴대하도록 할 수 있다.

제24조의9(물품검색기 설치 및 사
용) ① 고정식 물품검색기는 정
문, 생활관 입구, 교육관 입구,
그 밖에 보호소년등이나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출입하
는 외부인에 대한 신체·의류·
휴대품의 검사가 필요한 장소에

-----.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의7(전자감지기의 설치) --
----- 소년원등-----

-----.

제24조의8(전자명찰의 사용) ---

--- 소년원등의 -----

-----.

제24조의9(물품검색기 설치 및 사
용) ① -----

----- 소년원
등-----

설치한다.

② (생 략)

③ 소속공무원이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을 출입하는 외부인의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고정식 물품검색기를 통과하게 하거나 휴대식 금속탐지기로 이를 확인한다.

제28조(징계양정) ① 원장은 규율을 위반한 보호소년등을 징계할 때에는 별표 1의2의 보호소년등의 징계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삭 제

③ ~ ⑤ (생 략)

제29조(포상) 원장은 별표 2의 보호소년등의 포상기준에 따라 교정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대하여 처우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을 할 수 있다. 다만, 모범상 및 공로상은 직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40조(보건·위생관리계획 수립 등) ① (생 략)

② 원장은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문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소년원등-----

-----.

제28조(징계양정) ① -----

----- 별표 2-----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9조(포상) ----- 별표 2의2 -----

위원회-----
-----.

-----.

제40조(보건·위생관리계획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신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보호소년 등이 문신제거 시술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문신제거 시술을 할 수 있다.

제42조(이발과 목욕) 보호소년등은 이발을 월 1회 이상, 목욕을 주 1회 이상 하여야 하며, 세부 사항은 교육활동·계절·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한다.

<신 설>

<신 설>

----- 보
호소년등-----

-----.

제42조(이발과 목욕)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이발 및 목욕을 수시로 하도록 하여 단정한 용모와 청결한 신체상태를 유지하게 한다.

제44조의2(진료기록부등의 보존) 법무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제44조의3(진료기록부등의 송부 및 요청) ①의무과장은 「의료법」 제21조의2에 따라 보호소년등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소년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소년이나 그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의료법」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진료기록의 사본 및 환자의 진료경

<신 설>

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송부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의무과장은 「의료법」 제21조의2에 따라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이 외래진료를 받는 지정 법무병원의 의료인이 출원생의 치료를 위하여 「의료법」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진료기록의 사본 및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 또는 전송할 것을 요청한 경우 해당 출원생이나 그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44조의4(출원생의 외래진료의 기간·방법) ①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법 제20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외래진료는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일로 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③ 외래진료는 정신건강의학과

<신 설>

제48조(분류심사의 방법 및 구분 등) ① 법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분류심사, 상담조사 및 검사의 결정 전 조사(이하 “분류심사등”이라 한다)는 면접조사,

의사의 진료, 검사시설에 의한 검사, 처방 및 투약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44조의5(출원생의 외래진료비용) ① 법 제20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외래진료에 필요한 비용은 법무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 또는 보호자등이 부담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외래진료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지정법무병원의 장은 별지 제36호서식의 외래진료비용 지급 청구서에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별 진료비 계산서를 첨부하여 매달 1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분류심사의 방법 및 구분 등) ① 법 제3조제2항 -----

심리검사, 정신의학적 진단, 행동관찰, 자기기록 검토, 자료조회, 현지조사 등의 방법에 따른다.

②·③ (생략)

제49조(면접조사) ① 면접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소년에 대한 면접조사의 경우: 직접 면담하는 방법
2.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소년의 보호자 및 그 밖의 참고인에 대한 면접조사의 경우: 직접 면담하거나 전화 등을 이용하는 방법

② (생략)

제59조(소년관리기록부 등) ①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소년관리기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략)
5. 연고지 약도
6. ~ 16. (생략)

② (생략)

제63조(보충수업) 소년원학교장은

--.

②·③ (현행과 같음)

제49조(면접조사) ① -----

-----.

1. 법 제3조제2항 -----

2. 법 제3조제2항 -----

② (현행과 같음)

제59조(소년관리기록부 등) ① --

-----.

1. ~ 4. (현행과 같음)

<삭제>

6. ~ 1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3조(보충수업) -----

보호소년의 학력신장과 수업일수의 충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평일의 경우 1일 2시간, 휴일의 경우 1일 8시간의 범위에서 보충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5조(졸업장의 발급 등) ① (생략)

② 제64조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전적학교의 졸업장 취득을 위한 학적사항의 통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생략)

제71조(종교의식 및 종교지도) 종교의식 및 종교지도는 휴업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휴업일 외에도 할 수 있다.

제75조(퇴원·임시퇴원 심사의 신청) ① 소년원장이 법 제43조제3항 및 제44조에 따라 관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보호소년의 출원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처우심사를 거쳐 퇴원, 임시

--- 휴업일-----

-----.

제65조(졸업장의 발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전적학교의 졸업장 취득을 위해 학적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제64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71조(종교활동) 종교활동은 --

-----.

-----.

제75조(퇴원·임시퇴원 심사의 신청) ① -----

-- 위원회의 심사-----

퇴원 여부를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호소년의 출원에 관한 처우심사를 할 때에는 보호소년의 생활태도, 교정 성적, 사회 적응 정도 및 보호자의 보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보호소년의 출원에 관한 처우심사 및 보호관찰심사 위원회의 심사 신청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76조(재·퇴원증명서) <신설>

(생략)

제81조의2(외래진료) ① 영 제2조 제1항제3호의 의료·재활교육 소년원의 원장은 의료·재활교육 소년원에서 퇴원 또는 임시 퇴원이 허가된 보호소년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

② -----
----- 위원회의 심사 -----

-----.

③ -----
--- 위원회의 심사 ---

--.

제76조(재·퇴원증명서) ① 영 제87조의2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민원을 통해 재·퇴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삭제>

따라 의료·재활교육 소년원에
서 필요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는 보호소
년이 22세가 될 때까지 할 수
있다.

제83조(퇴원 또는 임시퇴원자의
계속수용) ①·② (생략)

③ 소년원장은 제2항에 따른 계
속수용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에는 처우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속수용을 허용할 수 있
다. 이 경우 해당 보호소년에게
계속수용 중의 준수사항을 지시
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제84조(임시퇴원취소자 인수소년
원의 사후조치) ① 영 제88조제
2항에 따라 임시퇴원취소자의
신병을 인수한 소년원장은 지체
없이 임시퇴원 당시의 해당 소
년원장에게 신병인수 사실을 알
리고, 가정·학교·사회환경 및
임시퇴원 기간 중의 생활상태를
종합심사하기 위한 처우심사를

제83조(퇴원 또는 임시퇴원자의
계속수용) ①·② (현행과 같
음)

③ -----

---- 위원회-----

--. -----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84조(임시퇴원취소자 인수소년
원의 사후조치) 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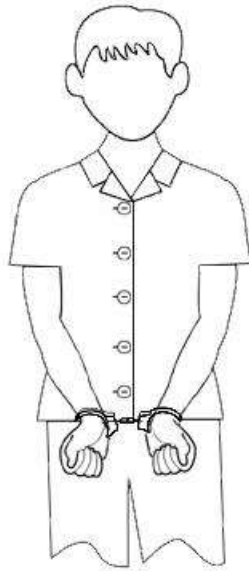
----- 위원회의 심

거쳐 자체수용 또는 이송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85조(임시퇴원취소로 재수용된 사람의 처우) ① 소년원장은 임시퇴원된 보호소년이 영 제88조에 따라 임시퇴원이 취소되어 재수용된 때에는 제53조에 따른 신입자교육을 실시하고, <u>처우심사</u>를 거쳐 개별처우계획을 새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재수용된 보호소년의 잔여 수용기간이 40일 미만인 경우에는 <u>처우심사</u>를 생략하고 임시퇴원 당시의 과정에 편성할 수 있다. ② (생략)	<u>사</u>----- -----. ②・③ (현행과 같음) 제85조(임시퇴원취소로 재수용된 사람의 처우) ① ----- ----- ----- ----- ----- <u>위원회</u> <u>의 심사</u>----- -----. ----- ----- <u>위원회의</u> <u>심사</u>----- -----. ② (현행과 같음)
--	---

별표 1부터 별표 1의11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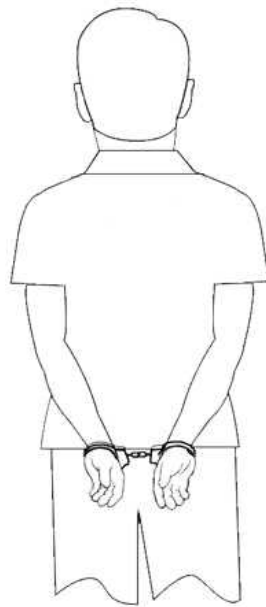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수갑 사용방법 1(제24조의2제1항제1호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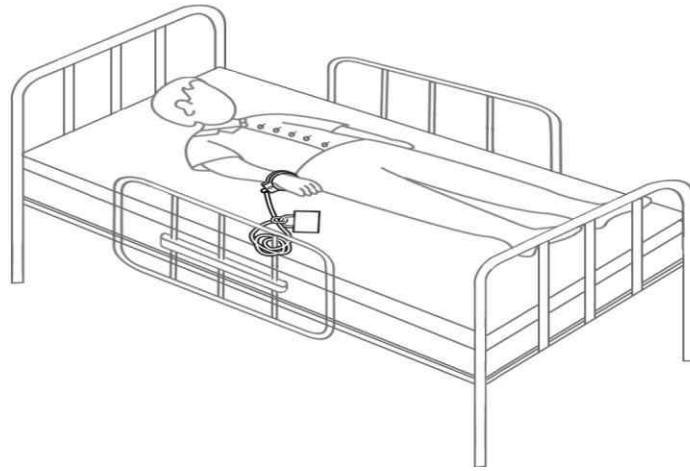
<앞으로 사용>

수갑 사용방법 2(제24조의2제1항제2호 관련)



<뒤로 사용>

수갑 사용방법 3(제24조의2제1항제3호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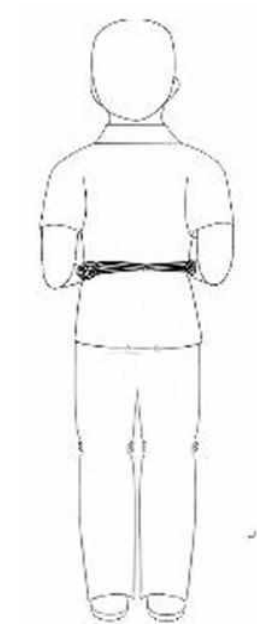
<한손 수갑>

포승 사용방법 1(제24조의2제2항제1호 관련)

<간이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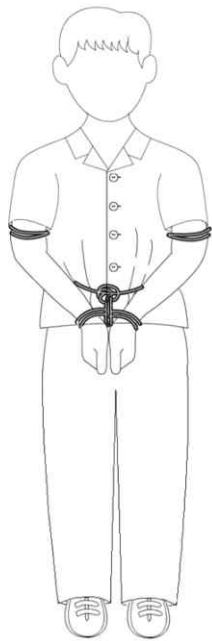
<앞면>



<뒷면>

포승 사용방법 1-2(제24조의2제2항제2호 관련)

<상체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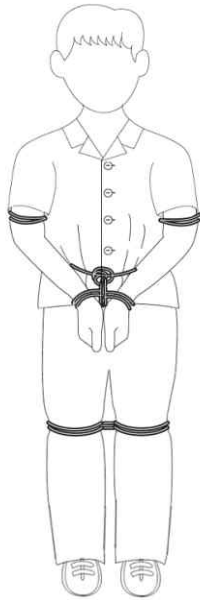
<앞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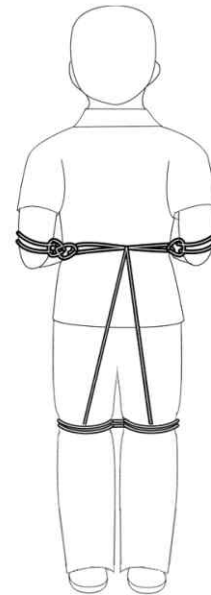
<뒷면>

포승 사용방법 1-3(제24조의2제2항제3호 관련)

<하체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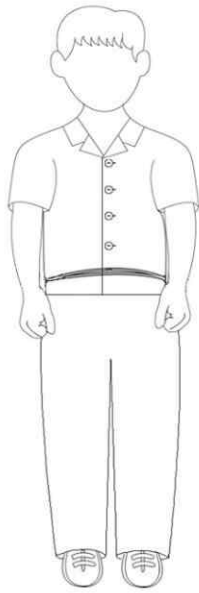
<앞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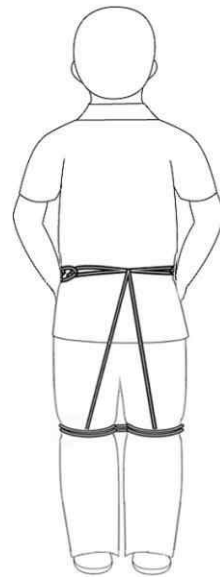
<뒷면>

포승 사용방법 1-4(제24조의2제2항제1호 관련)

<족승>



<앞면>



<뒷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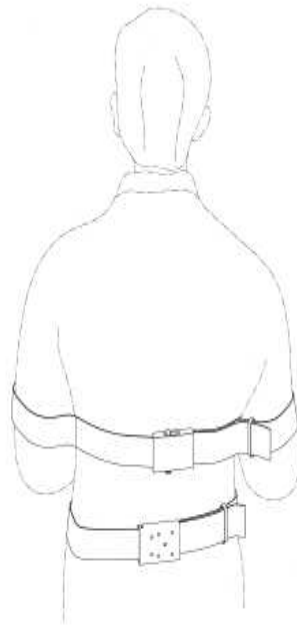
※ 족승의 경우 포승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포승 사용방법 1-5(제24조의2제2항제2호 관련)

<벨트형 포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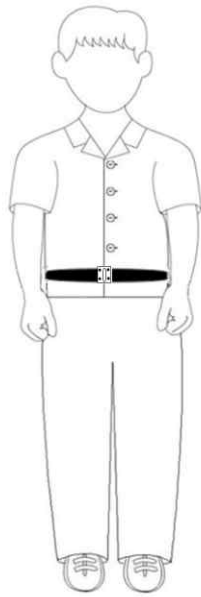
<앞면>



<뒷면>

포승 사용방법 1-6(제24조의2제2항제1호 관련)

<벨트형 족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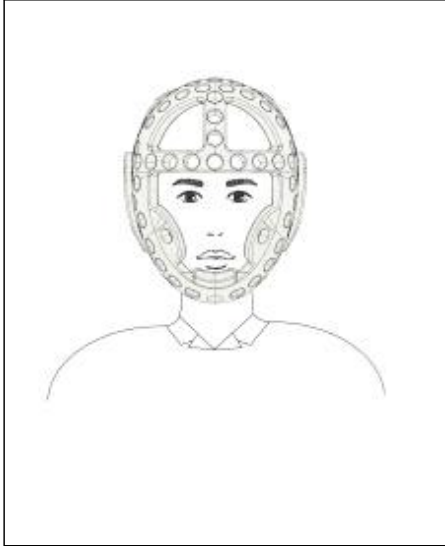
<앞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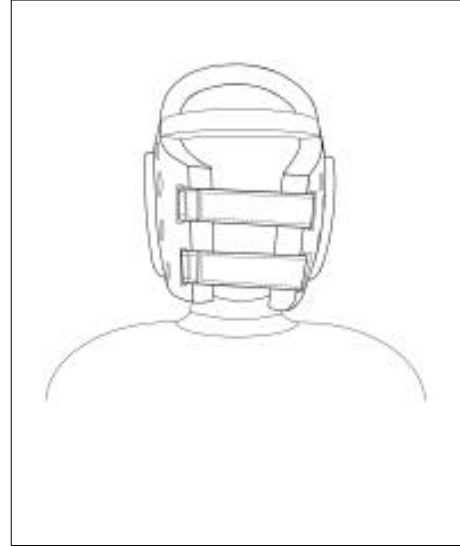
<뒷면>

※ 족승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머리보호장비 사용방법(제24조의2제5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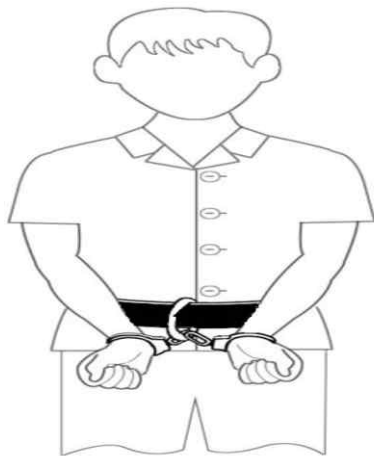
(앞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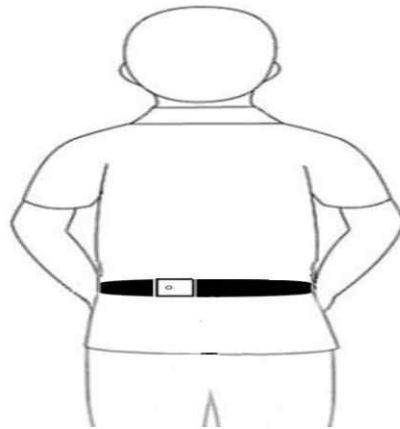
(뒷면)

보호대 사용방법(제24조의2제6항 관련)

<벨트보호대>



(앞면)



(뒷면)

별표 2의 제목 “보호소년등의 포상기준(제29조 관련)”을 “보호소년등의 징계기준(제28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2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보호소년등의 징계기준(제28조제1항 관련)

징계구분	징계대상행위
근신	○ 법 제14조의4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제27조의2제1호, 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 제12호 및 제1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공동행사 참가 정지, 단체 체육활동 정지, 텔레비전 시청 제한, 원내 봉사활동에 해당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공동행사 참가 정지, 단체 체육활동 정지, 텔레비전 시청 제한, 원내 봉사활동	○ 근신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징계를 감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27조의2제2호, 제8호, 제9호, 제11호, 제13호 및 제1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훈계	○ 공동행사 참가 정지, 단체 체육활동 정지, 텔레비전 시청 제한, 원내 봉사활동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징계를 감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서면사과	○ 법 제14조의4 또는 이 규칙 제27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별표 2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2]

보호소년등의 포상기준 (제29조 관련)

포상종류	포상기준
우수상	1. 전국단위 각종 외부경시대회에서 입상한 자 2. 상급학교 진학시험, 각급학교 검정고시 등에서 수석·차석·최연소성적을 거둔 자
기능상	직업능력개발훈련관련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자
모범상	1. 생활태도가 성실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된 자 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다른 학생에게 귀감이 되는 선행을 한 자
공로상	1. 학생 자치활동과 규범생활, 안전관리 등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2. 수용사고 방지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별표 4의 특수분류심사의 대상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분류심사 실시기준(제48조제3항관련)

구 분	대상자	영 역				방 법
		신 체	심 리	환 경	행 동	
일 반 분 류 심 사	·전체소년 ·문제 또는 비 행요인이 단 순한 자	·신체계측 ·건강진단 ·신체특징 ·신체결함	·지능정도 ·적성 ·성격특징	·양육관계 ·가정환경 ·학교생활 ·사회생활	·특징 ·경향 ·부적응행동	·신체의학적진 찰법 ·집단심리검사 법 ·면접조사법 ·행동관찰법 자료조회법
특 수 분 류 심 사	· 상습비행자 · 성격, 행동이 상자 · 지적능력이 부족한 사람 · 신체기능이 상자 · 마약류 또는 유해화학물질 남용자 · 강력범(존속 살인, 방화 등), · 그 밖에 일반 분류심사에서 이월된 자	·신체기능우 열 및 이상	·성격장애 ·정신질환 ·뇌기능장애	·양육관계 ·가정환경 ·학교생활 ·사회생활	·이상행동	·정신의학적진 단법 ·개별심리검사 법 ·현지조사법

별지 제36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국립 ○ ○ 병원

년 월 일

수 신 법무부장관

발 신 국립○○병원장 직인

제 목 외래진료비용 지급 청구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5제3항에 따라 외래진료비용 지급을 청구합니다.

(단위: 원)

연번	성명	생년월일	진료과	병명	진료일자	청구금액	비고

붙임: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별 진료비 계산서

210mm×297mm[백상지 80g/㎡]